2002 농림사업 시행지침

2002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발표되었다. 이 지침서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,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와 분야별 사업시행지침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2회에 걸쳐 주요내용을 발췌해 수록한다.

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(과장 김실중, 사무관 한종현), 축산경영과(과장 정동홍, 사무관 권동태)입니다.

- 편집부

Ⅰ. 축산 계열화 사업 (공공)

가축계열화 사업

1. 목 적

○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·가공·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○ 수출산업과 연계하여 계열주체를 육성

○ 계열사업체의 신규지정을 지양하고 기존계열사업체의 경영개선 방향으로 추진

○ 완전,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를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계열 사업 추진

3. 근거법령 : 축산법 제3조

4.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	'91~'99	'00	'01	2002년 (예산안)	2003이후
돼지	사업량	16	1(2)	(1)	(4)	
	금 액	64,620	3,3980	653	8,554	
돼지	사업량	21	2	-	(1)	
	금 액	68,059	6,600	-	1,920	

5. 2002년도 사업시행요령

< 사업개요 >

가. 사업내용설명

o 사업기간 : 2002~2003년(신규사업은 2년차로 추진)

o 지원내용 : [별표1] 참조

o 대상축종 : 돼지, 닭

o 자금지원대상자 : 시·도지사로부터 계열화사업자로 선정된 자

나. 자금지원방법

o 사업비는 계열주체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(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)

o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신규사업 신청절차 및 방법에 의함.

- 사업완료 예정년도에 추가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미완료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- 양돈계열화 사업의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할 경우에 우선 지원

o 민원발생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원해결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

- 단 재신청시 대상지이외 사업계획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

o 계열농가 생산시설은 축산종합자금사업의 시설자금지원 또는 가축계열화사업에 포함하여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시.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하여야 함.

o 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하여 생산시설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제 시설지원의 일반농가 지원내용과 동일 적용

o 계열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주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소요액의 50% 범위내에서 자금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원

- 계열화사육비 집행계획서 작성방법

· 지원내용 : 계열주체 및 계열농가(축산단지 포함)가 운영하고 있는 축사에서 소요되는 종축입식 또는 자축구입비, 사료비, 약품비, 위탁사육 수수료

· 작성내용 : 계열화 사업체계도, 계열농

가명단, 계열농가별 사육형태 및 사육 두수, 월간 및 연간생산·입식·출하두수, 1회전에 소요되는 사료비 및 약품비, 연간 종축입식비, 기타운영사항

다. 2002년도 사업비(예산안)내용

(단위:개소, 백만원)

	돼 지				닭	합 계
	산수골	대상	목우촌	도드람	목우촌	
계열화사육비	653	3,656	2,939	1,306	1,920	10,474

< 추진체계 >

가. 사업주관기관 : 시·도지사

나. 사업담당부서

○ 농림부 축산물유통과(02-500-1928~9), 축산경영과(02-500-1906~7)

○ 시·도 : 도 축산과, 광역시 농정과(축산계)

○ 시·군·자치구 : 축산과 또는 축산담당(축산계)

다. 사업시행

(1) 사업계획의 수립

○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사업 주관기관에 제출

○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

○ 생산한 축산물에 대한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(고유 브랜드)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함.

○ 계열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요원확보

- 축산계열대학 졸업자이며,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경영 및 기술지도요원을 2명이상 확보하여야 함.

○ 사업계획의 조정 :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 조정 및 확정

(2) 계열화업체의 준수사항

○ 협의체 구성

-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업체와 계열농가 사이에 가축계열화 사업 협의체를 구성.운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함

- 협의체는 지역별 농가수를 감안하여 구성하고 수수료 지급금액, 자재공급, 농가와의 계약등 주요사항을 계열사업주체와 협의 결정

- 사업주관기관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거나 사고분쟁의 조정, 계약체결, 계약사항의 이행등을 지도

○ 계열화 업체의 이행사항

- 계열사업주체로 지정된 자는 계열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에 관한 정관을 작성 사업주관기관에 제출

- 계열사업주체는 참여농가와 대등한 지

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계열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,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함.

-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계열주체는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육두수 조절 및 수매.비축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.

- 계열사업주체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,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.

-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서 생산한 가축에 대하여 판매대책(자체구매, 판매알선)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함.

- 생산계열사업 위주의 부분계열화 업체는 자체가공·판매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수출가공업체 등과 계약하여 단계적으로 완전계열화사업 형태로 전환 추진

- 양돈계열주체는 계열농가 선정시 양돈단지 등을 우선 선정하여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규격돈 생산기반을 확보

- 양돈계열주체가 운영하는 종돈장의 관리자와 계열농가는「양돈전문기술교육」을 필히 이수하여 농가경영기술을 향상시켜야 함.

< 행정사항 >

가. 지원집행 세부요령(사업주관기관)

○ 토목·건축공사는 경쟁입찰(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)로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시·군에서 입회하여 지도·감독

- 시공업체 선정·계약시에는 시·군에서 입회하고 응찰업체 및 낙찰업체를 공개하는 등 지도·감독

- 1개사업이 2~5개로 분리계약될 경우(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)에는 선정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·군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

○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에서 준공까지 감리 실시

○ 자금지원액에 비례한 자부담집행액의 적정성 여부확인

○ 자금지원시 담당기술직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후 자금집행 통보

○ 기계, 장비구입비 및 사업비 집행시는 관련 증빙자료 비치(축발기금운영규정 제14조 제7항에 의함)

○ 계열주체가 계열화사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세부집행실적은 사업주관기관인

시·도지사(시·군 경유)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

o 자금집행과 정산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, 기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자료 비치

o 지원대상자 및 가족의 자가노력비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

o 장비,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,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토록 지도하여 부실공사를 방지

나. 사업계획변경

o 주관기관 : 시·도지사

o 사업계획변경시에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전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임에 유의하여 당초 사업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

다. 사후관리

o 사후관리는 '91년이후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로 하며 자금상환이 만료되는 연도까지로 한다

o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게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확인(별표3)

o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 대한 규격품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및 경영지도

o 사업주관기관은 년2회이상 계열화사업자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함

o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기간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(추진중인 사업은 매분기별 1회이상 점검)

o 시정지시

- 2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

- 3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자 지정을 해지하고 지원된 자금을 회수 조치. 다만, 이 경우 계열농가에게 지원된 생산시설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회수대상에서 제외

라. 보 고

보고사항	보고기관	보고일
· 사업계획서	시 · 도	3.31까지
· 가축계열화 평가 운영 실태(추진실적)보고 -미완료된 업체포함	시 · 도	매분기 익월5일까지

6. 2003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

가. 신청서 제출기관 : 시.군

나. 신청절차 : 사업계획서 작성→관할 시 · 군(1월말까지)→시 · 도→농협중앙회 사전심사(2월말까지)→시 · 도(적합 또는 보완된 사업계획)→예산신청(3월말까지)

다. 대상자선정

(1) 신청자격

o 축산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신고 · 허가 · 등록된 부화업, 종축업 및 도축업, 축산물종합처리장(육가공업 포함), 배합사료제조업을 하는 자 및 농업협동조합(지역, 업종) 및 중앙회

- 축산관련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 사업장 건설대상토지가 확보된 자

- 가축별로 다음에 정하는 계열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함

· 돼지 :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

· 닭 : 종계 및 부화장, 배합사료공장, 도계장, 육가공장사업중 2종이상 보유자

- 기 타

.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어야 함

. 융자금에 대한 담보능력 및 자부담, 운영자금에 대한 자금능력이 있어야 함

· 육계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화 사업실적(사업신청 직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50만수 이상)이 있어야 한다.

(2) 우선순위

o 사전심사결과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.

-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 연계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

- 축산단지 등 기존시설과 연계 ·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

- 도축장, 사료공장, 종돈장, 육가공장 및 유통판매 시설중 2종이상을 보유한 계열주체

- 계열화사업을 지정받은 자로서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

- 생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

(3) 신청절차

o 계열사업자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는 [별지 제2호서식]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신청

o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자격요건 및 사업장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등을 검토하여 시.군.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.도지사에게 신청.

o 시.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농협중앙회의 사전심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예산을 신청(신청기한 엄수)

⑷ 사업타당성 검토

o 사업계획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농협중앙회에 심사위원회 설치.

o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은 학계, 농협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협중앙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

o 농협중앙회의 사전심사 방법은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"가축계열화 사업계획서 사전심사요령"에 의거 실시하고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의

- 주요심사내용 : 계열주체 자격요건, 부지확보여부 지역주민민원발생 및 법적 제한사항 유무, 계열요소구비사항, 사업계획서 타당성, 계열농가와의 계약여부, 경영기록사항, 자금상환능력 등

o 농협중앙회장은 심사결과 지정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"부적합", 지정요건에 적합하고 사업계획이 타당한 경우 "적합" 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시.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 보고

-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·도지사에게 보완 요청

o 시.도지사는 심사결과 "적합"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예산을 신청

-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보완하게 한 후 심사하여야 하며, "부적합" 판정의 경우에는 동 사유가 충족되기 이전에는 다시 심사 요청할 수 없음.

o 수출업체와 연계한 계열주체 또는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한 계열주체는 축산물 생산을 위한 자축구입비 및 사료비 등 계열화사육비를 신청 할 수 있다(별표1 참조)

- 신청자격 : 수출업체와 연계한 계열주체 또는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

한 계열주체

- 지원대상 : 계열주체 및 계열농가(양돈단지 포함)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소요되는 자축구입비, 사료비, 약품비, 위탁사육수수료 등

- 신청범위 : 지원대상 사업비의 50%이내

- 신청방법 : 계열주체는 사업주관기관(시·군 경유)에 계열화 사업체계도, 계열농가명단, 계열농가별 사육형태, 사육두수, 연간생산·입식·출하두수, 1회전에 소요되는 사료비 및 약품비 등을 제출

⑸ 계열화사업자 지정

o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지원계획이 확정되거나 시·도지사가 계열화사업요건을 갖춘 자라고 인정하는 경우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음.

o 본 사업추진요령 시행이전에 가축계열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지원받은 자는 본 요령에 의하여 계열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것으로 간주.

라. 기타사항

o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것, 연도별 새로 갖출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(신규 및 보완사업)

o 계열사업 완성년도, 년도별 계열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, 년도별 시설 설치계획,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(축발기금, 자부담구분)을 명시

o 사업추진규모

- 돼 지 : 연간 비육돈 생산.처리능력 45천두(1.5천두×2회×15호)이상

- 닭(육계) : 연간 육계 생산·처리능력 4,000천수 이상(종계 40천수×100수) 농가확보 : 25호 이상

o 사업추진 기간내 확보해야 할 사항

- 돼지 : 상기 규모이상의 비육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돈 및 자돈생산기반시설

- 닭(육계) : 상기 규모이상의 병아리를 생산·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과 부화장(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)

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(과장 정동흥, 사무관 권동태사무관, 최염순)축산물 유통과(과장 김실중, 사무관 한종현)입니다.

- 편집부

II.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 지원 (공공)

축산 자조금 조성

7조

○ 축산법 제3조

1. 목 적

○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축산물의 판로 확대,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○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자금 조성에 대한 보조금 지급

○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축산분야별로 자조금 조성액의 100% 지원

3. 근거법령

○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

4. 2002년도 사업시행요령

≪사업개요≫

가. 사업내용

1) 배 경

○ '92년부터 2000년까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축산(젖소, 돼지, 닭) 분야 자조금 사업 실시

○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(2000.6.1)에 의거 축산물 자조금 근거 규정 마련

2) 자조금 조성 대상품목

○ 한우, 젖소, 돼지, 닭, 오리, 꿀벌

3) 자조금조성단체의 형태

○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 :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비영리단체

4) 보조금지급대상 자조금 조성단체의 범위

○ 보조금 지급대상의 자조금조성단체의 자격

- '01년도 축산분야 해당품목의 자조금 사업을 수행한 사단법인

5) 자조금의 용도

○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

○ 판로확대 및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시장개척

○ 품질향상.수급조절을 위한 교육

○ 유통정보 제공 및 유통정보화, 관측조사, 기술 및 공동상표의 개발 연구

○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 및 자조금 운용상 소요되는 경상적 비용

6)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.운영

○ 자조금 및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둠

- 구성(15인 이내) : 생산자 11인 이내(위원장 : 자조금조성단체의 장), 학계.공무원.소비자.유통전문가 각 1인 이내

- 기능 : 사업계획안 및 자조금관리규정안 등 자조금조성단체의 자조금 관련 주요업무 심의의결

- 회의 :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,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

○ 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음(자조금 관련 업무 전반사항 분장)

○ 연간 자조금 조성액(보조금 제외)의 3% 해당액(연간 3천만원) 범위내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사무요원의 운영경비 사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2001년 축발기금	2002년 사업비					
		합 계	축발기금			지방비	자부담
			소 계	보 조	융 자		
축산자조금	1,761	4,446	2,223	2,223 (50%)	-	-	2,223 (50%)

나. 2002년도 지원계획

≪추진체계≫

가. 사업주관기관 : 농림부

○ 낙농·양계 자조금 : 축산경영과

○ 양돈자조금 : 축산물유통과

나. 사업담당부서

○ 농림부 축산경영과(02-500-1906) : 젖소, 닭

○ 농림부 축산물유통과(02-500-1916) : 돼지

다. 사업시행절차

(1) 자조금 조성의사 결정방법

○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품목 및 규모를 갖춘 자조금조성단체가 정부지원을 받아 자조금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, 그 구성원 중 10인 이상이 "자조금조성계획안"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

○ 자조금조성계획안에 대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당해 단체 자조금관리규정에 의한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자조금 조성의사 확정(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 중에 법인이 있을 경우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는 의결에 참여하기 전에 동일한 기준에 따라 법인 구성원이 결정한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야 함)

- 자조금 조성의사는 1회계연도(1. 1.~12. 31.) 단위로 결정함

(2) 자조금관리규정

○ 자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조금 관리규정 작성

- 목적, 사업, 명칭, 사무소의 소재지, 회원의 자격(가입.탈퇴.제재사항 등), 회원의 탈퇴.제명시 납입금 계산방법, 납입금의 조성방법.납입금액.수납장소, 자조금의 용도 및 사용방법, 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리에 관한 사항,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, 의결(집행)기관 및 의결(집행)방법, 기구.인원 및 경비의 범위, 자조금특별회계 설치 및 회계처리 사항

(3) 사업계획의 승인

○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자조금관리규정을 첨부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신청

- 자조금사업계획서에는 자조금의 조성규모 및 조성방법, 전년도 생산실적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전전년도 기준) 및 자조금 거출 동의(대의원회 결정포함) 관련 서류 첨부

○ 사업주관기관은 자조금관리규정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자를 확정(사업계획 승인).

(4) 보조금 교부 절차 등

o 자조금사업단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,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당해 단체 자조금관리규정에 의한 구성원이 납부하여 조성한 자조금의 내역서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 주관기관에 보조금 신청

o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자조금 조성액(당해 품목 연간 생산액의 1% 해당액)의 100% 상당액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

⑸ 사업시행

o 자조금조성단체는 자조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사업 추진

≪행정사항≫

o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의 보조금교부결정통보에 따라 서류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,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조치

-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,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법령, 규정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

o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자조금의 보조금지급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고, 자조금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를 2003.1.31일까지 보고(별지1)

5. 200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

가. 신청서 제출기관 : 사업주관기관(농림부 축산경영과, 축산물유통과)

나. 신청자격 :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비영리단체(사단법인)

다. 신청절차

o 2002. 3. 31.까지 사업주관기관에 신청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2002. 4. 20.까지 예산요구

*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, 자조금관리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2002년 사항 참조(다만,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